

여신거래기본약관

이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 ①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채무자(리스이용자·할부금융이용자·차주·합인 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서설 대여(리스), 할부 금융, 대출, 페토링, 어음할인,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②이 약관은 채무자가 원형·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조,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이 약관은 금융회사의 본·지점과 채무기업의 경우 본·지점 포함)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거래와 제우수(행여)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④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속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자율과 지연배상금

- ①리스료·할부금·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계산방법·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이자 등의 유통은 거래의 약속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원활할 때까지 금융회사가 그 유통을 변경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원활할 때까지 금융회사는 그 유통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제4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원료 전에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시장경변이 생길 때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기별통지에 의하여 그 유통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를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하소연 때에는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협조로 부탁되도록 경허하기로 합니다.
④제4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유통에 관한 금융회사의 인상·인하는 간접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 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제5항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약정한 율률,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자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금지하기로 하며,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유통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이자 등과 시연체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회사가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범위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그 변경된 기준에 적용됩니다.
⑦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금융회사가 정하는 전자체세통에 이를 기록하기로 합니다. 다만, 특별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⑧제3항 및 제6항의 경우,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현재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는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한 반회복제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4조 비용의부담

- ①채무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외의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세금·감보건 등의 권리의 행사·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2. 담보목적을 조사·주식·처분에 관한 비용
3.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을 위한 통지비용
②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감아모, 곧 감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날로부터 2일 깊을 때까지의 날짜수 만큼, 삼법 제54조(상사법정이 유통범위, 언론판권이나 약정으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자체일수)에 따라 금융회사가 정한 기한과 함께 그 유통을 하도록 합니다.
③금융회사는 여신약정에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여서시설대여의 경우 리스로를 일감),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4조2 대출계약 철회

- ①채무자가 인한(한)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회기한"이라 합니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대출금액이 4년 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2.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3. 시설(대여)리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일부결제금액이 월(월)정(리본방)
4.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력업체(단기(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대상 대출 등 금융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대출은 제외)
③제4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 이자,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재화, 용역(정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을 포함)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서명(정성)설정약서에 따라 금융회사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
2.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세제공과금
3.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4.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④금융회사는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⑤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⑥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은행 등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5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금융회사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담보

- ①채무자는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서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기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는 또는 보증인은 체권보전을 위한 금융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제7조에서 허용한 연대보증인에 한합니다.
②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에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금융회사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기록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 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번체에 중당할 수 있거나 하며, 세무자는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 같은 강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물을 10일까지 담보설정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개시 결정이 있어 전 체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분 후 제3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멀실·훼손, 처분, 기타 그 담보기능을 감소시키 금융회사의 체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그 밖의 현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제3자를 위한 권리의 설정 혹은 제3자로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④제6조와 함께 환경위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기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금융회사가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제7조 연대보증인

- ①금융회사는 채무자와 여신거래를 할 경우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별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제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공동대표
2. 법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 중 1인에 한함, 단, 라목의 경우 2인 이상 가능
가. 회내주주
나. 자본 30% 이상 대주주, 회장주 이사
다. 본인과 배우자, 4촌이내 혈족·인척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30% 이상인 주주
라. 대표자나 또는 대표자단, 고용임원 제외
마. 무기책임사원
3. 자동차구입과 관련된 어신(스. 할부·오토론 포함)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기인의 차량구입시 공동보증의로 등록
나. 일정목적(택시, 승합, 회화,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차량구입
4. 기타 여신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자 명의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
나. 금융선축자금 대출시 토지소유자, 건축주, 시행사 및 시공사의 대표자 등 건물신축과 관련된 자(다만, 건물후취득보취득시 연대보증계약 해지)
다. 분양계약에 대한 이주비·증도금·임주자금 대출시 시행사·시공사의 대표자
라. 법인에 있는 단체조합 등에 대한 어음취급시 그 구성원(조합원)
5.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입하는 경우
③제3항과 2호 리조트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보증 합의로는 해당 연대보증인수로 누누어 신청합니다.
④연대보증인은 채무자에 약정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기로 합니다.
⑤채무자는 금융회사의 동의없이 채무를 제3자로 하여금 인수 또는 승계하게 한 경우 채무자는 면책되지 않고 보증채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⑥연대보증인은 일부 대위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금융회사로부터 헌득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들 등 거래의 미번체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이남아 있는 동안에는 금융회사에 있어서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금융회사와 동시에 그 권리로 행사할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다음으로 벌여야 합니다.
⑦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라로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보증은 이 보증 약정에 의하여 철회기한이 되거나, 미리 한 보증에 허용되는 경우에만 해지될 수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약정에 의한 합의가 더해지는 것으로 합니다.
⑧연대보증인은 채무의 일부변제 또는 채무자의 담보제공 등이 있는 경우 보증의 해지·제재, 보증액의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세무 만기도록 또는 기한연장 시장에서 다른 연대보증인으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등 요구에 따라 실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제8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 ①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는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은) 그로 기름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첩납처분·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세체납처분 척수가 있는 때 디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가압류를 시도로 기울입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 제4항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제외)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이나 첩납처분·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세체납처분 척수가 있는 때
3. 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거나, 채무불이행자금부정 등에 신청이 있는 때
4. 조세징과에 관하여 국제세금회수법 제14조 또는 지방세법 제26조에 의한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처지분이 있는 때
5. 패밀, 도피 기타의 사유로 기금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채무자의 과정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포괄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7. 채무자가 원상회복에 위하여 대신 지급하는 경우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8. 어음거래와 관련하여 취득·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증서를 제출하여 금융회사의 체권보전의 중대한 손실을 발생한 때
②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유증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글 이를 같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기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제우수(행지제)와 같이 이의이상으로 신설된다는 사실(채무자가 기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에 대해서 연체로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우수 및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기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채무자가 기계인 경우 7영업일)일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글 이를 같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 등(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의 리스 및 할부금 제외)을 지급하기로 한 후부터 계속하여 기업인 경우에는 14년간 지체한 때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일(가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자체제작
2. 분양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금의 원리금을 2회(가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는 때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청탁기한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요건이 충족한 때
③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에 헌득한 경우에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면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글 이를 같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번체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채무를 헌득하지 아니한 때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제재에 대하여 입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4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설정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체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22조에 따른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전한 계약거래 유지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청탁경찰자, 경찰·검찰·법원의 합동,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고 인정된 때
6. 신용보증·관리규약상 신용거래보증금·언제정보·미지급증·제3자위·제4자위·제5자위·제6자위·제7자위·제8자위·제9자위 등
④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글 이를 같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6조 제1항, 제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리스(임대)이나 담보물에 대한 보험 기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금융회사는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 또는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완공된 기계·건설물 등을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금융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써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 하지 아니할 때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로도, 금융회사의 영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제9조 기한의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제3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금융회사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로 발생한 날로부터 기한의 경우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 금융회사가 인정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제3조 제3항과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제4항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제3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오지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제10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

- ①이 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인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②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체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③금융회사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체부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④보증계약 체결 후 금융회사가 보증인의 승낙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와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1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정한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의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단, 리스계약의 경우 부속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할인어음의 환매체무

- ①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체무를 지고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체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으로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그를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②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체무를 지고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체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으로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그를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③제1항, 제2항에 의한 체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금융회사가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④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8조 제5항을 준용합니다.

제13조 금융회사로부터의 상계 등

- ①기한의 도래 또는 제8조에 의한 기한전 차무변제외무, 제12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체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금융회사에 대한 체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세권과 그 세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금융회사에 대한 체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세권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대리환급 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③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세권을 상계할 경우, 금융회사는 상기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세권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세권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④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2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기로 하며, 채권·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금융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금융회사가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날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외국한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실행 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14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 ①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체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체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반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로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로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원래체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③제1항, 제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체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각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을 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합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 할인율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외국한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15조 어음의 제시·교부

- ①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어음체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통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으로 상계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4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금융회사가 어음체권에 의하여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금융회사가 어음의 지급정산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시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제13조, 제14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기로 한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계속 접수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금융회사가 어음체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지급청구를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금융회사의 변제 등 충당지정

- ①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체무를 변제하거나, 금융회사가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체무 전액을 없애기로 부족한 때에는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②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체무변제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변제 또는 상계될 체무를 개인 경우로서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한금 또는 각종 보증금 등으로 채무자의 체무전액을 없애기로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른 경우 금융회사의 세권보전에 지정된 상길 업무가 있는 때에는, 물적답변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증이나 차분의 난이, 변제기의 정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는 자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금융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체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금융회사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로 정하는 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세권보전에 지정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로 합니다.

제17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 ①채무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체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②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금융회사가 상계에 충당할 체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18조 위험부담·연체조항

- ①채무자의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금융회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체무를 깊이로 하되,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금융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체무를 확정한 후 깊이로 합니다.
②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금융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한 번호 또는 어음이나 증서 등의 인열·서명을 채무자나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삼玷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둘째롭지 않고 인정하여 기재한 때에는, 어음·증서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9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 ①채무자 및 보증인은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금융회사가 정한 서면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②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및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를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지기로 합니다.

제20조 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 및 보증인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히 작성·제출하기로 합니다.

제21조 통지의 효력

- ①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채무자 및 보증인은 제19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넓습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 차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넓습니다.
③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22조 회보와 조사

- ①채무자는 그 재산·부채현황·경영·입출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금융회사가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광장·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기로 합니다.
②채무자는 그 재산·영업·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종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곧 등지하기로 합니다.
③금융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세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 ①금융회사는 국가경제 및 금융시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서면·전화·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알리고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율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고,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③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24조 이행장소·준거법

- ①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금융회사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채무자는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로도, 이 약관에 터집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5조 약관·부속약관

- ①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로써, 그 밖에는 거래방법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르세, 이를 알아야 합니다. 이 경우 통지나 게시판에는 제2항의 뜻을 명시하기로 합니다.
②통지를 하거나 게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 등에 의한 이의가 금융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넓습니다.

제26조 관할법원의 합의

- ①이 약관에 터집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길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이율로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